

# 『구미중추도시생활권(구미시·김천시·칠곡군)협의회 규약(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안 자 : 구미시장

### 2. 제안이유

-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에 따라 구미시·김천시·칠곡군이 지역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협력 하기로 함에 따라
-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생활권사업을 협의·총괄하기 위한 생활권협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 생활권 내 주민들이 불편 없이 어디서나 공공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자원의 공동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협의회 명칭 (안 제2조)
-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안 제3조)
- 협의회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안 제4조)
-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안 제5조)
- 실무협의회 운영 (안 제8조)
-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안 제15조)

###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5. 검토의견

### ○ 본 규약안은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 주요 내용으로는

- 규약의 목적(안 제1조), 협의회 구성(안 제3조), 협의회 조직(안 제4조), 협의사무(안 제5조), 회의규정(안 제10조) 등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음.

### ○ 검토결과

-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에 따라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상호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권 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권 내 주민들의 공공서비스 향상 및 지역자원 공동 활용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 인근 김천시와 칠곡군은 9월이나 10월에 상정 계획 중이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됨.

참고로,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는 평택·안성 생활권협의회 규약을 고시 중에 있으며, 전남 4개군(영암·장흥·강진·완도군)은 행정협의회 성격의 행복생활권 협의회를 규약으로 고시('14. 3.27) 하여 시행하고 있음.